

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(안) 보고

1 관련근거

- ☐ 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기준(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)
- ☐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(의회에 대한 보고)

2 개편사유

- ☐ 시민·직원 안전 위협 지하철 범죄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인력 확보
- ☐ 9호선 운영부문 기관사 업무 위탁종료에 따른 소요인력 확보
- ☐ 정보보호의 전문성 및 대응역량 강화 위한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

3 주요내용

- ☐ 정원조정
 - 지하철 안전인력 232명 증원(16,606명 → 16,838명)
 - 1인 근무시 지하철 화재 등 사건·사고 신속 대응 한계(조당 3인 확보)
 - 안전확보 소요인력 368명 중 136명 자체 재배치하고 232명 증원
 - 9호선 운영부문(CIC) 별도 정원 29명 증원(297명 → 326명)
 - 1단계 구간에 위탁중인 기관사 업무 직영화('25.4.1) 필요인력 28명
 - 총 정원 증가(300명 초과)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자 전담인력 1명
 - ※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 겸직불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)
- ☐ 기타 기구변동
 -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정보보호 전담부서 의무설치 따른 「정보보안처」 신설
 - 자산 5조 원 이상 공기업의 처·실 급 이상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
 - ※ 관련법령 :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)

현행

[별표2]

정원표(제26조 관련)

총정원	임원	일반직					청원경찰	한시정원
		계	1급	2급	3급	4급이하		
16,606	7	15,945	45	199	1,362	14,339	14	640

※ 한시정원은 해당 사업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까지 운영한다.

※ 9호선운영부문(CIC) 정원(297명)은 9호선운영 부문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개정안

[별표2]

정원표(제26조 관련)

총정원	임원	일반직					청원경찰	한시정원
		계	1급	2급	3급	4급이하		
16,838	7	16,177	45	199	1,362	14,571	14	640

※ 한시정원은 해당 사업 협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까지 운영한다.

※ 9호선운영부문(CIC) 정원(326명)은 9호선운영 부문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